

의안번호	2211969
의 퇴 인	서영석의원
회 답 일	2025. 9. 16.
추 계 번호	25C4208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9년에 각각 4,900만원으로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,800만원 (연평균 1,96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-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14조의5 (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)	49	-	-	49	-	98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 (직접구매 해외 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4조의4 (직접구매 해외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개정안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·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4조의5 (직접구매 해외 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·사용실태,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조의2 (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)	×	현행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
2	안 제14조의4 (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)	×	현행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
3	안 제14조의5 (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)	○	-

□ (안 제14조의2)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는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 중인 ‘수입식품 정보마루(<https://impfood.mfds.go.kr>)’에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- 2025년 9월 현재 ‘수입식품정보마루’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위생용품 위해 정보와 안전정보,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

□ (안 제14조의4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접 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실시의 경우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「위생용품 안전관리(1131-301)」 사업의 검사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위생용품 안전관리(1131-301)」(2025년 예산 14.1억원) 중 ‘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’ 사업(2025년 예산 5.0억원)을 통하여 수입 위생용품 정밀검사, 해외 직구 등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14조의5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따른 비용임
 - 해당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‘소비자 생활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’는 3년에 한 번씩 수행하고 있는데, 2024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4,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
 -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첫 해인 2026년부터 3년마다 4,900만원의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안 제14조의5 (직접구매 해외위 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)	49	-	-	49	-	98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assembly.go.kr